

# 승례문과 함께 무너져 내린 안전의식

우리의 안전 불감증은 언제 끝이 내려나

서해 바다의 기름유출사고와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참사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기 전인데 또 다시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승례문이 화재로 어처구니없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심스러운 것은 이번 승례문 화재에서도 안전 불감증, 화재 불감증이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에서부터 매년 발생하는 사고에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만 탓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이다.

글 | 편집자 주



승례문\_건제한 옛 모습

## 상실된 초기진화

이번 승례문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으며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승례문이 전소된 데에는 초기진화 실패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하늘과 땅차이다.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도 초기진화에 실패했다면 지금의 창경궁은 보존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한 시민이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진화를 하였기에 400여만원의

손실만으로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다.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승례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의 허술한 대응과 판단 그리고 목조건물에 맞지 않는 진화방법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5시간만에 국보 1호와 함께 국민의 마음까지 쓸어 내렸다.

## 우리나라 목조 문화재는 안전한가?

그동안 승례문은 야간 조명시설로 인한 누전 등 전기사고 가능성과 개방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방화 가능성



이 재기돼 왔었다. 그러나 승례문에는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쿨러나 경보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소화기만 1층과 2층 통틀어 8개뿐이었다.

승례문이 국보 1호에 맞지 않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소방시설로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국보 1호 승례문이 이정도인데 다른 목재문화재는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예로 전남 목재문화재 303동 중 화재발생시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연약제(다이메폭시)가 처리된 곳은 195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문화재 108동은 무방비 사태이다. 소화전이 없는 곳도 능가사 대웅전(보물 1307호) 등 모두 105동에 달하고 있으며, 비치된 소화전도 일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전라남도도와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지역 내 소방시설 합동점검에서 나주향교와 무위사 등 대부분의 목재문화재는 소화기 노후 및 충압부족, 옥외소화전 작동불량, 가스 호스 연결부 고무캡 미설치, 소화기 노후 등을 지적 받기도 하였다.

### 과거 동종 화재는 그때뿐

과거 낙산사 동종 소실,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 구룡사 대웅전 화재 등 문화재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대비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대에 대해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우리나라에 비중이 높은 문화재인 승례문이 순위에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해 화재로부터 무방비상태였던 것을 볼 때 달라진 것은 없다. 어느 언론사에서 낙산사 화재 1년 후 화재방지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되짚어본 기사가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문화재청은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목조

문화재 화재 방지시설 점검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나, 당시까지 방재시설의 현황 파악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현행법으로 화재로부터 보호할 만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문화재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 소방법” 제정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승례문이 소실된 지금도 제자리 걸음이다.

머나먼 이웃나라 일본은 1949년 1월 26일 나라현에 있는 목조 건물인 법륜사 금당벽화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관련 방재시스템을 확립하고, 1950년 “정기적인 화재 방지 훈련”, “문화재 건조물에 관한 현장 검사와 화재·재해 방지 요령 지도”,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 “전통 건물축이 밀집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방지 지도나 방재 협력체제 정비” 등 문화재 보호를 총괄하는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며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 승례문을 계기로 문화재 방재시스템 확립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는 3,000점에 이른다. 시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하면 만점이 넘는다. 3월부터는 건조기로 화재로부터 어느 것도 안심할 수는 없는 시기이다. 과거 낙산사, 구룡사, 서장대 화재, 오늘의 승례문 화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늦었다고 할 때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도 모르나 더 많은 문화재가 화염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립을 위한 기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어느 마스크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